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동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동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
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동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영동군의회 소관
7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추가, 변경, 삭제 등 일괄 정
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영동군의회 소관 조례 중 개정 전
의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조문을 변경, 삭제하고, 위임된 사
항에 관하여 정함
 - (안 제1조) 영동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
위에 관한 조례
 - (안 제2조)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안 제3조)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 (안 제4조)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 (안 제5조)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안 제6조) 영동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 (안 제7조)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대상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동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비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동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영동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동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제51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 제131조”로 한다.

제2조(「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52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영동군의회(다음부터 “의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다음부터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다음부터 “조사”라 한다)”를 “영동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가 영동군(다음부터”를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영동군(이하”로, “감사를 할”을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할”로, “(다음부터”를 “(이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조사”를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다음부터”를 “(이하”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부터 제129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법 제131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6호) 중 “영 제42조제4호”를 “영 제44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1조제3항”을 “법 제49조제3항”으로, “영 제39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과 영 제50조부터 제52조”를 “영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과 영 제46조부터 제53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1조 제3항”을 “법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을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제4항”을 “영 제4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1조제4항”을 “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영 제46조제1항”을 “영 제49조제1항”으로, “영 제47조”를 “영 제50조”로 한다.

제3조(「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제62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및 제71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다음부터”를 각각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윤리 및”을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장과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한다.

제5조(「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를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의회사무과장”을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영동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의 개정) 영동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4조·제45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를 “제53조·제5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56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56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54조”를 “법 제5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5월·6월”을 “5월·6월”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영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원”을 “지방의회의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법 제45조제2항”을 “법 제54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처리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안의 제출 및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또는 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의원이 발의한다.

②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 의원 5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7조(「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으로, “임기개시”를 “임기 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법 제43조제3항”으로,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의원의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영동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와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겸직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영동군이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 기관·단체

2. 영동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영동군으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영동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별표]

징 계 기 준(제9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보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43조제6항)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2. 영리행위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행위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보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별지 제1호서식]

영동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선거구분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야	농수산 <input type="checkbox"/> , 상공업 <input type="checkbox"/> ,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 교육 <input type="checkbox"/> ,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 기타 <input type="checkbox"/>			
	영리성 여부	영리 <input type="checkbox"/> , 비영리 <input type="checkbox"/>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input type="checkbox"/> , 보수 미수령 <input type="checkbox"/>			
	보수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

(인)

영동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1호의2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 례 대 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

(인)

영동군의회의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영동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영동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범위) ① 영동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영동군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과장</p> <p>5.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p> <p>② (생략)</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51조-----</p> <p>-----</p> <p>-----</p> <p>-----</p> <p>제2조(범위) ① -----</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p> <p>-----</p> <p>5. 「지방자치법」 제131조-----</p> <p>-----</p> <p>② (현행과 같음)</p>

제2조(「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p>	<p>제1조(목적) ----- 「지방자</p>

치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5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영동군의회(다음부터 “의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다음부터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다음부터 “조사”라 한다)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의회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특별위원회(다음부터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조사 요구가 의결되

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 영동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

제2조(감사) ①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영동군(이하 -----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할 ----- (이하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조(조사) ①-----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면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조사특별위원회(다음부터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제5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
3.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6. 영 제4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 기관, 단체 및 법인

② (생략)

제6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9조에 규정된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군에 위임된 사무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

-----(이하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

①-----
-----.

1. (현행과 같음)
2. -----(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부터 제129조-----
3. 법 제131조-----
4. 영 제44조제1항제4호-----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

①----- 법 제13조-----

-----.

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②·③ (생략)

제11조(과태료) ①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② 의장은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수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보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생략)
2. 해당 증인이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위반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실

③·④ (생략)

제12조(징계) 감사나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한 제척사유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나 조사를 하거나, 영 제47조에서 규정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영동군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과태료) ①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5항-----

-----.

② ----- 영 제46조제4항-----

-----.

1. (현행과 같음)
2. ----- 법 제49조제4항-----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징계) -----
----- 영 제49조제1항-----

영 제50조-----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	--------

제3조(「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제62조에 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영동군 의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 법」 제64조제1항 및 제71조 -- ----- ----- ----- -----.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영동군의 회(다음부터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 청원, 중요 조례안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이하 ----- ----- ----- -----이하 ----- -----.
②의회는 의원의 <u>윤리 및 징계</u> 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 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둔 다.	②----- <u>윤리강령과 윤 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u>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과 간사의 직무)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5조(위원장과 간사의 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위원장과 간사가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u>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4조(「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동군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0조----- ----- ----- -----.

제5조(「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동군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 ----- ----- ----- ----- -----.

하는 다음 각 호의 집회를 말한다.

1. 2. (생략)

제4조(연간 회의 총일수) 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100일 이내로 한다.

② ③ (생략)

제6조(회기) ① 의회가 정례회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각각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② (생략)

제7조(집회일) ① 정례회는 영 제54조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집회일에 개최한다. 다만, 해당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1. 2. (생략)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집회일 전·후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5월·6월이나 11월·12월 중에서 해당 사유를 밝혀 정례

--.

1. 2. (현행과 같음)

제4조(연간 회의 총일수) ① -----
----- 법 제56조제2항-----

②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회기) ① -----
----- 법 제56조제2항-----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집회일) ① ----- 법 제53조-----
-----.

-----.

1. 2. (현행과 같음)

② -----

----- 5월·6월-----

회의 집회일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등 각각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 임시회의 의결 또는 해당 정례회의 집회 후 본회의의 추인(追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8조(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에 해당 선거일과 중복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이전 임시회에서 그 집회시기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9조(집회공고 등) ① (생략)

②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제출될 경우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15일 이내에 그 요구일과 달리 기본일정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의회의원 -----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집회공고 등) ① (현행과 같음)

----- 법 -----
제54조제3항-----

에 맞추어 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요구일을 집회일로 공고한다.

③ ~ ⑤ (생략)

제10조(처리안건 등) 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영 제5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안건과 그 밖에 발의·제출되는 의안 등을 각각 처리한다.

② 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다.

③·④ (생략)

<신설>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처리안건 등) 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처리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법 제49조-----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의안의 제출 및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또는 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의원이 발의한다.

②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 의원 5분의 1이상의 서

<p>제11조 · 제12조 (생략)</p>	<p>명을 받아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p> <p>제12조 · 제13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p>
-------------------------	--

제7조(「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5조(검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영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검직사항이 있거나 없을 경우로 구분하되, 그에 필요한 서식은 별</p>	<p>제5조(검직신고) ① -----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 ----- ----- 임기 개시-- ----- ----- ----- ----- ----- ----- ----- ----- -----</p> <p>② -----법 제43조제3항----- ----- ----- ----- ----- -----</p>

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④ (생략)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영동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의 2서식-----.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의원의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영동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영동군이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 기관·단체
2. 영동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영동군으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영동군수의 인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검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검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영동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영동군과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검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검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